



제 419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45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제도 신설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7.

다. 회 부 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맹견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 동물 및 그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고를 접수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업무 우선순위에 밀려 법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줄 미착용 맹견 등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
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제도 신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하여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의2(동물관리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관리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 및 계도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맹견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 및 계도 3. 제22조 각 호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 출입 감시 및 계도 4.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의 관리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③ 동물관리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동물관리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관리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동물관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관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동물관리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현행	개정안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그 밖에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¹⁾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규정²⁾을 두고 있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특히 높은 맹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2)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견3)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등록대상동물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이는 2018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 소유자등의 준수사항과 맹견 출입금지 장소 규정4)이, 2022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사육허가제 규정 등이 각각 도입된데 따른 것임.

3)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4)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현행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주요 규정 비교 】

구분		등록대상동물	맹견
정의		<u>월령 2개월 이상의 개 중</u> 1. <u>주택 및 준주택</u>에서 기르는 개 2. 그 외 장소에서 <u>반려목적</u>으로 기르는 개	<u>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u>로서, 1.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부령으로 정하는 <u>특정 견종</u>의 개 2. 기질평가 결과 <u>공격성이 높아</u> 시·도지사가 <u>지정한 개</u>
등록/허가		등록제 (위반시 100만원 이하 <u>과태료</u>)	허가제⁵⁾ (위반시 1년 이하의 <u>징역</u> 또는 1천만원 이하의 <u>벌금</u>)
소유자등 준수사항	평상시	이하의 사람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 - <u>소유자등</u> (위반시 <u>50만원 이하의 과태료</u>)	이하의 사람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 - 소유자등 - 단, <u>맹견사육허가</u>를 받은 경우, <u>허가</u>를 받은 사람 또는 <u>전문지식</u>을 가진 사람 (위반시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외출시	<u>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동장치</u>를 사용할 것 (위반시 <u>50만원 이하의 과태료</u>)	<u>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u>를 하거나 <u>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u>를 할 것 (위반시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해당 동물의 출입금지		<u>시·도 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가능 (위반시 <u>법률상 제재 없음</u>)	<u>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소 출입 금지</u> (위반시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5)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2024. 10. 25.

【 맹견 건종별 등록 현황 (2024년 11월말 기준) 】

(단위: 두)

구분	합계	도사견	핏블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블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외
등록두수	1,981	201	981	27	140	595	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맹견에 관한 관리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물림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일각에서는 관리 인력 확대 등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 】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송건수	2,154	2,114	2,197	2,216	2,235

자료: 소방청

이에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맹견에 대한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위촉직인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는 이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직인 명예동물보호관⁶⁾의 직무와 중첩되는 것으로 보임.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2023년 기준 644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

【 2023년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644	114	82	8	16	28	15	6	10	169	43	15	30	42	28	1	23	14

주) 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은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3년간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교육·홍보 상담·지도	동물학대행위 신고·정보 제공	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2021년	2,931	1,661	213	971	86
2022년	3,238	2,045	98	996	99
2023년	4,068	2,358	93	1,285	3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 「동물보호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 중에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⁷⁾ 동물보호관의 직무 중에는 등록대상동물의 관리·맹견 관리 및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이 포함되어 있는바,⁸⁾

개정안에 따른 동물관리지도원이 수행하려는 직무인 등록대상동물·맹견의 관리 및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은 이미 유사한 위촉직인 명예동물보호관이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명예동물보호관이 해당 직무를 이미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법 집행 과정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인 것으로 밝히고 있는바,

그 이유가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의 수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인지,

7) 「동물보호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4.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8) 「동물보호법」 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
6. 법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

명예동물보호관의 그 직무가 복잡다기하여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감독 직무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목줄 미착용 등의 안전관리 조치의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도 동물보호관의 직무인 등록대상 동물 및 맹견 관리 업무 지원이 가능하므로, 동물관리지도원을 별도로 위촉하기보다는 명예동물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안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동물관리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독”의 뜻이 담당 공무원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동물관리지도원 1인이 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관리지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427